

【농생명산업대학원】 (푸드테크)학과 학과내규 전문

제정 2026. 4. 14.

규정 항목	내 용										
① 지도학생수의 제한 (§8)	○ 지도교수 배정 시기는 1학기 이내로 하고, 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 예정 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○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 ○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										
② 보충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 (§20-①, ③)	○ 보충과목의 이수 대상자 및 이수학점과 이수과목은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 ○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학점은 학과(전공)의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										
③ 전공과목 운영 세부사항 (세칙 3조②)	○ 학과(전공에서)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. (푸드테크 개론, 푸드테크 융합기술, 식품자동화공정개론, 푸드테크 규제 및 진흥법규, 식품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, 푸드테크 현장연구, 푸드테크 비즈니스, 캡스톤디자인) ○ 학과(전공)교수가 한 학기에 담당할 수 있는 과목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 ○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2과목으로 한다. ①푸드테크 개론 ②푸드테크 융합기술										
④ 대체실적에 관한 사항 (계약학과만 해당) (§24)	○ 학위청구자격 - 산업대학원에서 정한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고, 다음 각 호의 관련 성과물을 1개 이상 제출한 자는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. 1.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논문 게재 1건 이상(게재 수락 포함) 2. 학회주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회 이상 3. 특허 출원 1건 이상 4. 이에 준하는 성과(현장 애로기술 해결형 과제결과 우수보고서, 캡스톤디자인 우수성과 보고서)로 주임교수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성과 [성과물 증빙 제출 기준] <table><tr><th>성과물</th><th>논문 게재</th><th>학술대회 발표</th><th>특허출원</th><th>기타 성과</th></tr><tr><td>증빙</td><td>논문 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</td><td>학술대회 프로그램, 발표자료</td><td>특허출원서</td><td> ○ 현장애로 기술 해결형 과제 결과 우수보고서 ○ 캡스톤디자인 우수성과 보고서 </td></tr></table>	성과물	논문 게재	학술대회 발표	특허출원	기타 성과	증빙	논문 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	학술대회 프로그램, 발표자료	특허출원서	○ 현장애로 기술 해결형 과제 결과 우수보고서 ○ 캡스톤디자인 우수성과 보고서
성과물	논문 게재	학술대회 발표	특허출원	기타 성과							
증빙	논문 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	학술대회 프로그램, 발표자료	특허출원서	○ 현장애로 기술 해결형 과제 결과 우수보고서 ○ 캡스톤디자인 우수성과 보고서							
⑤ 기타 학과(전공)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	○ ○										